

[별표] 공제급여 청구 제한 <개정 2025. 9. 1.>

1. 환자의 상병이 지속적인 치료를 하여도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달한 경우
2. 입학 전, 휴학 기간, 의료공제비 미납기간에 발생 된 질병 및 부상인 경우
3.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한급여, 산정특례 및 종합전문병원 진찰료
4. 유전 또는 선천적 질환
5. 의료공제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질환
 - 피부 질환 : 주근깨, 무모, 백모, 점
 - 치과 질환 : 보철, 부정교합치의 교정
 - 이비인후과 질환 : 비중격만곡증,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수면다원검사)
 - 여성 질환 : 임신(출산, 유산, 난임), 자궁내막증(선종·근종·낭종)
 - 비뇨기 질환 : 단순포경, 발기부전(난임), 불감증
 - 정신 질환 : 자해, 양극성, 조현병, AADHD, PTSD, 우울증, 중독 장애 등
 - 만성질환 : 만성간염, 고혈압, 당뇨, 천식, 간질, 크론병, 강직성척추염, 루푸스, 골다공증, 통풍 등
 - 특정 질환 : 심장, 뇌혈관, 간, 신장, 폐, 희귀·난치성, 각종 암 진료 및 이로 인한 수술
 - 응급 질환 : 경증, 비응급 환자 응급실 진료(대학병원급, 권역센터, 지역센터)
6. 예방접종, 건강진단, 시력검사
7.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및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교정 치료
8. 교통사고, 폭력, 상해, 자해 등으로 치료비 지불 책임이 의료공제에 있지 아니한 경우
9. 의료기관 외에서 구매한 치료 목적의 약, 주사
10. 보조기, 보청기, 의수·족, 의안, 콘택트렌즈의 재료비
11. 국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2. 기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공제 재정을 고려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질병